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가단1213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21. 1. 27. 체결된 현금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소외 B 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 경위

- 1) B 은 2006.9.12. 자신이 소유하던 '경기도 안산시 분당구 C ,
D '에 소재하던 토지를 총 1,153,5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산하 분당세무서장은 2009.12.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66,236,88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양도소득세 결의서)

- 2) 소 제기일 현재 B 은 양도소득세 815,914,38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 제2호증 채납유무조회)

<표1> B 의 소재기일(2022.05.24.) 현재 국세채납액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채납액 (단위:원)
양도소득세	2006년	2006.9.30.	2009-12-31	466,236,880	815,914,380
합계				466,236,880	815,914,380

나. B 의 재산(현금) 처분 경위

B 은 위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채납된 상태에서 현금 50,000,000원을(이하 '이 사건 현
금'이라 합니다) 자녀인 피고 A 에게 2021.1.27. 증여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다. 당사자간의 관계

피고 A는 B의 자녀이며, 원고는 B에게 국세 채권이 있는 자입니다.(갑 제4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성립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末)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참조)하므로, B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부동산 양도가 발생한 달의 말일인 2006.9.30.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또한 B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원고 산하 분당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납세고지 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나. B의 사해행위

-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B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할 납부의무가 성립하여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추후 과세판정으로 하여금 과세를 하게 하여 양도소득세가 채납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 당시의 채무초과

B가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할 당시인 2021.1.27. B의 적극재산은 부동산인 강원도 강릉시 E 아파트 F 아파트 G 호 및 이 사건 '현금' 50,000,000원 상당 뿐이고, 소극재산은 채납된 양도소득세 조세채무 815,914,380원이며 이 사건 '현금'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실화 되었음이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갑 제5호증 채납자재산현황표)

(단위:원)

구 분		내 역	평가액	입증자료
적극재산	이 사건 '현금'		50,000,000	
	부동산 (아파트)	강릉시 E 아파트 F 아파트 G 호	58,800,000	갑 제6호증 공동주택 공시가격
	소계(①)		108,800,000	
소극재산	조세채무	국세	815,914,380	
	소계(②)		815,914,380	
사해행위 당시 순자산(③) (①-②)			△ 707,114,380	
사해행위	'현금'		50,000,000	
	소계(④)		50,000,000	
채무초과 (③-④)			△ 757,114,380	

다. B의 사해의사

-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선임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 2) B은 양도소득세가 채납된 상태에서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채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의 심화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B의 자녀로서 B이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국세채납정리를 위한 고액채납자 증여자료 기획분석 자료를 시달 받은 2022.3.02. B이 피고 A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결 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B 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현금'에 대한 증여계약은 원고 산하 분당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현금'을 소외 B 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현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으로 현실적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는 그 취소의 방법을 가액배상으로 구하며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불입과 같이 산정하여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